

2023년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

법정 의무 신고 감염병

#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(CRE\*) 감염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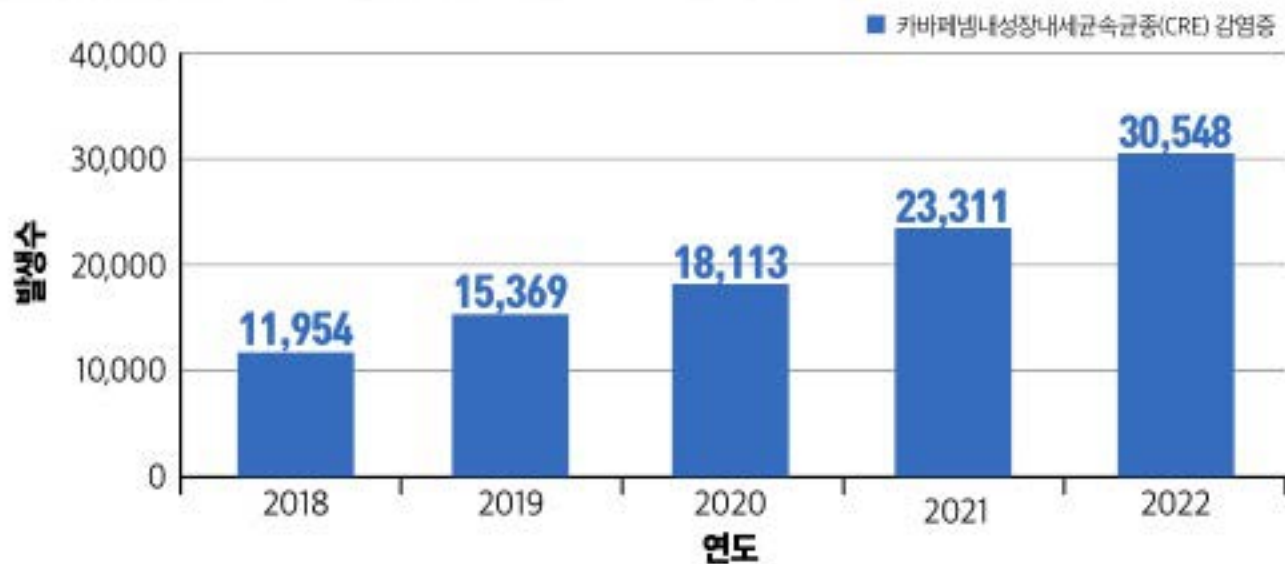


\* Carbapenem-resistant Enterobacteriaceae

## CRE 감염증이란?

### - 제2급감염병

-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군종
- 국내뿐 아니라,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- 최근 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CRE(CPE\*)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음



\* Carbapenemase-producing *Enterobacteriaceae*

## 감염경로

-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,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 가능

## 감염요인

- 인공호흡장치, 중심정맥관,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,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

##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

-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,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
- 카바페넴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,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

##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-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분리 동정

## 치료

-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,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

## 예방 및 관리

-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
- 의료기구의 소독/멸균 시행,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
-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, 분리되는 경우 환자 격리, 접촉주의,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,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

## 진단 신고 기준

- 신고범위 : 환자, 병원체 보유자
- 신고시기 : **24시간 이내 신고**
- 진단기준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환자      | 혈액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         |
| 병원체 보유자 |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이 분리된 사람 |

※ 환자, 병원체보유자 중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은 별도 신고

## - 신고방법

|   |   |   |
|---|---|---|
| 웹 신고<br>( <a href="https://is.kdca.go.kr">https://is.kdca.go.kr</a> )               |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<br>관할 보건소 FAX 신고  | CPE 신고서 양식  |
|  |  |  |

## CRE 전파 예방을 위한 지침

- CRE 환자\*와 접촉하기 전, 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
- CRE 환자\*의 방에 들어가기 전 장갑과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착용
- CRE 환자\*의 방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등 개인보호구 탈의 및 손위생
- CRE 환자\* 1인실 격리 또는 CRE 환자\*끼리만 병실을 공유
- 의료용품(혈압계, 체온계 등)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 및 전담 의료진 배치

# FAQ

## Q1. CRE에 감염되었을 때 모두 치료해야 하나요?

A

**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이며  
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.**

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이며,  
만약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,  
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 
치료합니다.

## Q2. CRE가 확인된 경우 반드시 CPE\* 확인 검사를 해야 하나요?

A

**예. CRE 양성으로 확인된 모든 균주는 CPE 확인 검사를 해야 하며, 확진 시 의료기관에서는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 작성합니다.**

의료기관 자체 CPE 확인 검사 가능 시 : 자체검사 시행

→ CPE 확진 검사 결과 입력

의료기관 자체 CPE 확인 검사 불가능 시 :  
의료기관 관할 시·도 보건환경원으로 문의

→ 검체검사실로 CRE 균주 송부

※ CPE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라면, 별도의 CPE 확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무관

※ 예외적으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사례조사서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히 격리 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행의 경우 CPE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



**Q3. A병원에서 CRE 감염증 신고 된 환자가 B병원 전원 후,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RE가 분리되었다면 발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?**

**A**

**예. 신고대상입니다.**

예) 8/20 A병원에서 CRE 감염증 발생 신고



9/20 B병원 격리실로 전원



9/20 B병원에서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 시행



검사결과 : CRE 분리



B병원 CRE 감염증 발생 신고

# 참고자료

**2023년도  
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**



**올바른 손씻기 영상**



**출처 :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,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관리지침**

감염병 문의 :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 
(043-719-7593/7596)